

**권리자 대상 공고·통지 내용**  
**(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**  
**부칙 제3조 제3항 각 호)**

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 시행일(19. 9. 16.)부터 소유 중인 실물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- 권리자는 전자증권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19. 9. 11.)까지 발행인(명의개서대행회사)에게株式이 전자 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(증권사계좌)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발행인은 전자증권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2019년 7월 18일

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한화빌딩 9층  
**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**  
**법인이사 맥쿼리자산운용(주)**  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